

보도시점 2025. 12. 31.(수) 06:00 (수요일 석간) 배포 2025. 12. 30.(화)

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 최신 기술·정책 반영하여 경제활동 확대(84개 → 100개), 활용성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21.12, 제정)한 것으로 녹색채권(’23~), 녹색여신(’25~)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주요 개정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세분화하고, 히트펌프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해 기존 84개 경제활동을 100개로 확대하여 기술 개발, 사업전략 수립, 신뢰성 있는 금융상품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기후적응 등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 명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쳤다.

※ 초안 도출(’25.6) 후 13개 분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25.6~11)

세부적으로는,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했으며 히트펌프,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추가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제시하는 제품 ‘배출효율기준 할당(BM, Benchmark)*’ 계수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의 녹색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 배출효율기준 할당(BM; Benchmark):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상향(공공건축물 4등급 → 3등급)하고, 기존의 국내 인증 이외에 ‘친환경 건축 인증(LEED)’ 등 국제 기준 인증을 추가하여 국내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 자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 등을 포함한 임업 분야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적응 목표를 전면 개편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에 관련된 세부 경제활동을 구성하여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금융·투자 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에너지 생산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환금융 등 제도 개편을 기점으로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녹색기준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금융·산업계 활용성을 강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실질적인 이행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개정 목록.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민선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책임자	실 장	조기숙	(02-2284-1960)
		담당자	책임연구원	김남균	(02-2284-1971)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부문, 100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93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붙임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개정 목록

○ (총 경제활동) 100개 (녹색부문 93개 / 전환부문 7개)

환경목표	분야	경제활동명	비고
녹색 부문			
공통 (4)	가. 산업	(1) 혁신품목 제조	-
		(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
	나. 연구개발	(1) 연구·개발·실증	개정
	다. ICT	(1) ICT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신설
온실가스 감축 (47)	가. 산업	(1)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개정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개정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개정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개정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화학물질 제조	개정
		(6)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제조	신설
		(7)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제조	신설
		(8)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개정
	나. 발전·에너지	(1) 바이오에너지 제조	개정
		(2) 청정메탄올 제조	신설
		(3) 수소 제조	개정
		(4) 암모니아 제조	-
		(5)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개정
		(6)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산	개정
		(7)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개정
		(8) 수력 기반 에너지 생산	개정
		(9) 해양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개정
		(10) 지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개정
		(11) 수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개정
		(12)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개정
		(13)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신설
		(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개정
		(1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16) 폐열·냉열 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
		(17)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개정
		(18) 열에너지 저장	개정
		(19)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
		(20)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
		(21) 히트펌프 구축·운영	신설
		(22)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개정
		(23)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

환경목표	분야	경제활동명	비고
온실가스 감축 (47)	다. 수송	(1)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차·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개정
		(2)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차·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개정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개정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개정
		(2)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개발·운영	신설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개정
		(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개정
		(5) 저탄소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개정
	마. 농축산업	(1) 저탄소 농업·축산업	개정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식품 제조	개정
		(3)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개정
	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개정
		(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개정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개정
		(4)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신설
	사. 임업	(1)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신설
		(2) 국산목재제품 이용	신설
기후변화 적응 (11)	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1)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신설
		(2) 기후변화 예측	개정
	나. 기후위기 평가	(1) 기후변화 영향평가	신설
		(2) 취약성·위험성 평가	신설
	다.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1)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개정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예술 활동	개정
		(3) 기후보험 및 재보험	신설
	라.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	(1)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물 부문)	개정
		(2)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산림·생태계 부문)	개정
		(3)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국토·연안 부문)	개정
		(4)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농수산 부문)	개정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8)	가. 물	(1) 물 공급	-
		(2) 물 수요 관리	-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
		(6) 물 재이용	-
		(7) 대체 수자원 활용	-
		(8) 비점오염저감(LID 등)	-

환경목표	분야	경제활동명	비고
순환경제로의 전환 (13)	가. 생산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
		(2)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개정
	나. 소비	(1) 다회용기 활용	-
		(2) 되채우기 매장 구축·운영	-
	다. 관리	(1)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
		(2) 사용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
	라. 재생	(1) 폐기물 재사용	-
		(2) 폐기물 재생이용	개정
		(3) 폐기물 재제조	-
		(4)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
		(6)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
오염방지 및 관리 (5)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
		(2) 악취 방지 및 저감	-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
	다.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
생물다양성 보전 (4)	가. 생물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
		(3) 도시내 생태공간 조성	개정
		(4)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5)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개정
	나. 발전·에너지	(1)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 운전)	-
		(4) 액화천연가스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
	다. 수송	(1)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	개정
		(2) 친환경 선박 도입	개정